

정정신고(보고)

2025년 3월 21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 한국형TDF 2050 증권투자신탁H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9.1.24

3. 정정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(97.5% VaR) 반영, 재무정보 확정)
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외국납부세액)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표지 |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 요약정보 | | |
|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 | - | 업데이트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5. 운용전문인력 | - | 업데이트 |
| 10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 험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 |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이하 '97.5% VaR') 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97.5 |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|--|--|
| | <p>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2.41%입니다.</p> | <p>% VaR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주2)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25.39%입니다.</p>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- | 업데이트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2)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(추 가)</p> | <p>나. 과세</p> 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/p> <p>2)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p> <p>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무자(판매 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p>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- | 업데이트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-</p> |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업데이트</p> |